

무단운전 사고의 보상처리

이 기 무

〈동부화재 보상전략팀장〉

‘무단운전’이란 차주와 고용 관계 또는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차주의 뜻에 관계없이 임의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를 무단운전이라 하는데 이러한 무단운전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상실무를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무단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의외로 잘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무단운전사고의 보상처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보상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고 ‘손해보상책임’은 가해자(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동차사고를 낸 가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면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라 해서 보험회사가 항상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무단운전에 대한 보상처리에 접근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대부분의 무단운전 사례에 있어서 ‘무단운전’을 한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운행자 책임’과 민법에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도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면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특단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써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무단운전임을 알고서 차량에

동승한 탑승자가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주로 책임을 면하게 됨.)

〈사례 1〉

군 여단장 甲의 자가용 승용차를 甲의 운전병 乙이 甲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후 丙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다쳤다면, 乙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丙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甲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이나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

〈사례 2〉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알고 동승하였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배법소정의 보

유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사례 3〉

댐 공사에 물재를 운반하는 회사소유 덤프트럭 운전사인 A가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B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가 위 차량에 B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 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B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이루어진 위 차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이외는 반대로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살펴본다.

〈사례 4〉

회사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이러한 무단운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회사의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사례 5〉

자동차 소유자 A가 자동차 밧데리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B에게 차량을 팔아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동차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등을 맡겨놓고 있던 중, 위 B의 종업원인 C가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B로부터 차량을 넘겨 받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자동차의 평상시 관리 및 보관상태,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A, B, C의 관계, C의 반환 의사 유무와 A의 승락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당시의 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서 A가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간접적 잠재적으로나마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A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다.

〈사례 6〉

비번인 회사택시의 운전자가 비번인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로 그 언니를 사망케 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그 차량이 비번차량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비추어 그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운행자 책임이 있음.

〈사례 7〉

회사 업무용 차량의 고용운전자인 甲이 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여 그 형인 乙의 집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는 사이에 그 형인 乙이 유홍을 위하여 甲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 위 乙의 무단운전은 甲의 열쇠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가능하였고 그의 차량반환의사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로서는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회사는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 있음.

이상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무단운전에 있어서 차주의 배상책임 존재여부는 무단운전의 형태와 피해자의 무단운전 사실의 인식 여부,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사례 1~3과 같은 유사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차량의 관리에 보다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무단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W)